



배포 일시	2023. 2. 23.(목)		
담당 부서	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	책임자	과 장 우정훈 (044-201-3538)
		담당자	팀 장 흥 철 (044-201-4990)
			사무관 김병철 (044-201-3521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부당한 월레비 갈취를 뿌리뽑기 위해 건설기계 자격 취소 및 정지를 신속 시행하겠습니다.

< 보도 내용 (한겨레·경향 등, 2.23) >

- ◆ 법원 “월레비는 사실상 임금”... 정부의 ‘협박·강요’와 달랐다(한겨레)
- ◆ 국토부 ‘불법’ 지목한 타워크레인 월레비 법원은 ‘임금’ 판단... 노동자 손 들어줬다(경향)

□ 광주의 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를 상대로 제기한 월레비 반환소송 결과, 1심에서는 월레비 지급은 소득세의 탈루 등 조세법상 불법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**근절되어야 할 관행**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상 사건의 경우 **비채변제***로 판단하여 원고의 반환청구를 기각했고,

* 민법 제742조 :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

○ 2심은 원고와 피고 간 **그간 월레비를 지급해온 관행에 따라 묵시적 계약이 성립했다고** 판단하며 원고 반환청구를 기각했습니다.

□ 법원의 판결은 월레비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판단이 아닌 개별 소송의 특정한 사실관계 하에서 **부당이득반환 가능 여부를** 판단한 사례이며,

○ 또한, 1·2심의 판단은 **금품요구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,**

- 이에 정부는 「건설기계관리법」 등을 개정하여 부당한 금품수수 요구에 대한 제재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현행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.
- 급여보다도 높은 월레비는 정상적인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, 그동안 조종사의 요구 등에 따라서 묵시적으로 지급해왔던 것으로 만약 월레비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면 합법적인 근로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.
 -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결과 1인이 월레비를 최대 2.2억원(월 평균 약 1.7천만원) 수취한 경우도 있으며, 월레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지급을 강요하면서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 등으로 건설사를 압박하여 갈취하는 등 정상적인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.
 - 건설사들이 부당한 관행을 끊어내고자 월레비 지급을 중단하려 한 바 있으나, 조종사들의 태업으로 인해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.
- 월레비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태업으로 공기에 차질을 빚는 한편, 월레비 지급에 따른 비용 상승은 결국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인 월레비 강요는 근절되어야 할 관행입니다.
 - 2심 판결에서도 재개발공사 사업비에 월레비가 포함되어 있는 등 그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.